

The Mandatory Reporting Law of the State of Arizona

애리조나 아동학대 의무신고법(애리조나 개정법령 13-3620):

“누구든 미성년자가 신체적 상해 및 학대, 방치 등 의도적인 학대의 피해자라는 타당한 의심이 들 때, 부모, 보호자 또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에 관한 내용은 경찰에만, 부모,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학대의 가해자일 때는 경찰과 아동보호서비스(CPS) 두 곳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Why do we focus on this law? 의무신고법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리조나 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투산교구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중점이기 때문입니다.

Who is obligated by the law? 적용대상은 누구입니까?

투산교구의 직원이나 봉사자 및 모든 공동체 인원이 적용대상이며, 모두는 의무신고법과 투산교구의 어린이보호 정책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야 합니다.

When am I required to act? 언제 보고해야 합니까?

직접 목격하였거나 제 삼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일지라도 일단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행위가 의심될 때에 보고합니다.

What must I do?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경찰과 동시에 아동보호서비스 (9-1-1 & 888-SOS-CHILD)에 보고합니다.
모바일사용시 **D**생략

When must I make the calls? 언제 전화 하나요?

사례를 인지한 “즉시”합니다.

What if I don't want to get involved? 개인적으로 연루되고 싶지 않다면?

학대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1급 경범죄, 성 학대일 경우 6급의 중죄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How do I make a report?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1) 경찰에 신고할 때, 다음의 기본정보를 준비합니다.

i) 학대나 방치가 의심되는 사례, ii) 아이의 이름, iii) 가족사항과 주소, iv) 가해자라 판단하는 이의 인적사항 및 주소, v) 학대가 이루어지는 장소, vi) 기타 급박한 사항

2) 아동학대가 직계가족과 관계된 경우 CPS(아동보호기관)에도 신고합니다.

a) 투산 교구내 몇 카운티는 경찰과 CPS 양쪽에 모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b) 두 군데 모두 신고하는 것이 아이의 안전을 도모하는 최선의 정책일 것입니다.

What do I do after making a report? 신고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아이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 경찰을 도와, 보거나 들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 공동체의 안전교육 담당자나 신부님께 보고합니다.
- 투산교구 '어린이/청소년/노약자 보호사무처'(520-792-3410)에 연락합니다.
- 신고한 사례에 대한 일지를 만들어 보관합니다.
- 72시간내에 CPS에 서면으로 보고합니다.(정해진 양식 사용)
- 조사기관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경찰에 계속 협조합니다.
- 조사후 아이와 가족에게 도움을 지원합니다.

What should I avoid doing if I observe abuse or receive a disclosure of abuse? 직접 목격하거나 정보를 입수했을 때 피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학대의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아이앞에서 평정심을 잃지않습니다.
-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신고할 거라는 생각을 버립니다.
- 위에 보고한다면서 신고를 늦추지 않습니다.
- 더 사정을 알아보려고 신고를 늦추지 말고, 직접 목격했거나 제 삼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신고합니다.
- 경찰의 허락을 받고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합니다.
-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및 가족, 모든 관련된 사항의 비밀을 유지합니다.
- 경찰이나 CPS의 초기반응이 기대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How can I prepare? 의무신고에 대한 준비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 안전교육은 법령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에 대한 연습이므로, 만약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전 교육 중에 공동체내에서나 다른 곳에서 있었던 사례를 서로 나누면서 실제상황에서 바른 선택이 무엇일지 깊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처의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신고서류를 편리한 곳에 늘 비치합니다.

*"Reasonable belief" simply means that because of what you have seen or heard you think abuse may possibly explain the child's condition.

- "Reasonable belief"의 의미: 직접 보거나 다른 이로부터 들은 내용이 아이가 학대를 받으므로 보이는 상태나 행동을 설명한다고 생각됨

Recap (요약)

1. RECOGNIZE possible abuse : 학대의심
2. MAKE a law enforcement report (911) : 경찰에 신고(911)
3. MAKE a DCS report (1-888-SOS-CHILD) : DCS (1-888-SOS-CHILD)에 신고
4. SHARE information with investigators : 조사에 협조